

# 긴급동의

심의결과 원안대로가결

의안번호	회의차수	회의일자	제 의 자
11	2	1980. 1. 12	총재 진병현

의안 “금융기관의 예금지급준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의결사항 “금융기관의 예금지급준비에 관한 규정”을

별안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1관계  
법구조항

한국은행법 제57조 및 제59조

제약되지

최근의 금융기관 예금지급준비율의 인하조정에 따라 금융기관의 최저예금지급준비금에 대한 현금보유 비율이 상승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현행 현금보유인허율을 상향 조정하고 아울러 특별정기예금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본건 전기와 같이 의결할 것을 제의함

참고 사항 1. 제의관계 법규조항

(한국은행법 제57조)

①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각 금융기관이 보유하여야 할 예금지급준비금의 최저율을 정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이하생략)

(한국은행법 제57조)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제57조, 제58조의 범위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1. 요구불예금과 기한부예금 또는 기타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분류에 의한 231

종류별 은행예금에 대한 개별적

최저예금 지급준비율의 결정

2. 최저예금지급준비금의 100분의 25

까지 한국은행권으로써 보유하는 것의

허용

2. 청부를

가 은행별 인허권금 및 시재금보유 주이

나 현금보유인허율 변경주이

## “금융기관 예금지급준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현행	개정 (안)
<p>제1조 제2조</p> <p style="text-align: center;">(생략)</p> <p>제3조 (예금의 종류) ① 제2조에 의한 저축성예금은 다음과 같으며 기타예금은 요구불예금으로 분류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정기예금 정기적금 등시예금 무변동기계예금 저축예금</p> <p>② 근로자 재산형성 저축예금은 저축성예금으로 분류한다</p> <p>제4조 (생략)</p> <p>제5조 (현금보유인허용) 금융기관은 예금지급 준비금 중 15% 까지 현존은행권으로 보유할 수 있다</p> <p>제6조 (이하생략)</p>	<p>제1조 ~ 제2조</p> <p style="text-align: center;">(현행과 같음)</p> <p>제3조 (예금의 종류) ① 제2조에 의한 저축성예금은 다음과 같으며 기타예금은 요구불예금으로 분류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정기예금 정기적금 통지예금 저축예금</p> <p>② 근로자 재산형성 저축예금은 저축성예금으로 분류한다</p> <p>제4조 (현행과 같음)</p> <p>제5조 (현금보유인허용) 금융기관은 예금지급 준비금 중 20% 까지 현존은행권으로 보유할 수 있다</p> <p>제6조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행</p> <p style="text-align: center;">( 신 설 )</p>	<p style="text-align: center;">개</p> <p style="text-align: center;">정 (안)</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1 이 규정은 1980. 1. 12.부터 시행한다</p> <p>나만 현금보유인허용은 1980. 1. 22 까지 종전 규정을 계속 적용한다.</p> <p>2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예입된 특별정기저축예금은 인출시 까지 종전 규정을 계속 적용한다.</p>

<첨부물 >

# 가. 은행별 인허현금 및 시재금보유추이

(단위: 억원, %)

	79. 10				79. 11				79. 12				80. 1.				
	요지준	인허현금	시재금	초과보유	요지준	인허현금	시재금	초과보유	요지준	인허현금	시재금	초과보유	요지준	인허현금	시재금	초과보유	
총	1,787	269	221	11.6	1,797	269	209	11.6	1,915	288	222	11.6	1,201	180	217	18.1	37
개	1,496	285	246	130	1,925	289	216	11.2	2,035	305	222	10.9	1,200	180	228	190	48
시	1,406	271	190	10.5	1,862	279	157	8.4	1,970	295	170	8.6	1,178	177	172	14.6	-
은	1,840	276	202	11.0	1,822	273	167	9.2	1,927	289	186	9.7	1,150	172	185	16.1	13
사	1,410	212	152	10.8	1,406	211	128	9.1	1,478	222	144	9.7	958	144	141	14.7	-
소	8,734	1,311	1,011	11.6	8,812	1,321	877	10.0	9,325	1,399	944	10.1	5,687	853	843	16.6	96
특	811	122	68	8.4	835	125	60	7.2	897	135	63	7.0	571	85	63	11.0	-
수	1,213	182	147	12.1	1,232	185	129	10.5	1,271	181	131	10.3	780	117	135	17.3	18
주	1,410	211	181	12.8	1,379	207	170	12.3	1,416	213	183	12.9	903	135	178	19.7	43
농	507	76	57	11.2	525	79	51	9.7	542	92	56	10.3	331	50	54	16.3	4
수	1,653	248	106	10.0	1,711	257	168	9.8	1,786	268	225	12.6	963	144	186	19.3	42
산	134	20	34	25.4	136	21	33	24.3	142	21	35	24.6	74	11	34	45.7	23
업	67	10	1	1.5	78	12	1	1.3	83	12	2	2.4	73	11	1	1.4	-
소	5,795	869	654	11.3	5,896	886	612	10.4	6,137	922	695	11.3	3,695	553	651	17.6	130

주 1. 비율은 요지준에 대한 시재금 비율임 2. 추정치 3. 79.10~12월중 평균 시재금 수준 전제

나. 현금보유인허율 변경추이

금통은위의 결일	시행일자	현금 보유 인허율	비 고
50. 6. 14	50. 6. 14	총예금요지준의 20%	[총예금의 10%]
52. 12. 18	53. 1. 1	" 25%	[공공요금등의 25%] 정기예금의 10% 기타일반예금의 20%]
53. 10. 1	53. 10. 16	공공예금정기예금 제외한 기타예금요지준의 25%	지준환조성에 따라 인허율상조정 [총예금의 20% → 공공예금의 30% 정기예금의 10% 기타예금의 20%]
57. 3. 30	57. 4. 1	오구불예금외준의 25%	지준 환인하에 따라 인허율인상조정 [공공예금의 30% 저축성예금의 10% 정기예금의 10% → 오구불예금의 20% 기타예금의 25%]
61. 7. 4	61. 7. 1	총예금전체준의 25%	지준 환인하에 따라 인허율인상조정 [저축성예금의 10% → 10%] 오구불예금의 20% → 14%]
65. 6. 24	65. 7. 16	" 10%	지준 환인상에 따라 인허율인하조정 [저축성예금의 10% → 10%] 오구불예금의 12% → 16%]
79. 7. 19	79. 7. 23	" 15%	현금통화비용상승 및 금융기관보유 현금 증가에 따라 인허율인상조정 [저축성예금의 20%] 오구불예금의 27%]

주: [ ] 내는 지준율

심의결과 원안대로가결

의안번호	회의차수	회의일자	제 의 사
22	5	1980. 2. 21	총재 신 병 현

의 안 "한국은행 여신업무이월" 일부개정

의결사항 1. "한국은행 여신업무이월" 을 별안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2. 실시일자 : 1980. 2. 21.

3. 경과조치

가. 1980 / 11이전에 이미 취득한 농업,

수산업, 회원사업어음, 빚 기타어음종

지방산업차입어음을 담보로 한 대출금

에 대하여는 동 담보어음에 관련된

금융기관대출의 당초 약정기한까지